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홈페이지 분양안내(http://www.lottecastle.co.kr)로 대체하여 운영 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는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서류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 됨)
 - ※ 제출서류는 당첨자 발표 후 별도로 추가 안내 할 예정입니다. (기본 서류는 홈페이지 공지 예정)
 - ※ 서류접수 우편물 발송 시 빠른 등기로 접수를 하셔야 하며 2020년 8월 7일 도착분까지 한합니다. (등기 영수증은 보관 바랍니다.)
 - ※ 공급계약은 인터넷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 될 예정입니다.(당첨자 개별통보 예정)
 - ※ 견본주택 관람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불가하며, 향후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시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의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분양 상담전화(☎1811-9797)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7.09.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이하(우주택 또는 1주택 소유자)만 1순위 청약 가능)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기관중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인천 및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 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는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3개월 미만의 단순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분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등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시행일(‘18.12.11.)전 공급계약된 건
 -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엑셀검색결과상 동일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 분양권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지급일
 -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가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정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정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정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정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가정제 제한 청약자가 가정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 이내 가정제 적용제한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정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인 경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 노원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격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주택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 자는 위반한 행위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2020년 4월 17일 개정 시행)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이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8.07.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1순위 (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	일반1순위 (기타) (서울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시 거주)	일반2순위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당첨자발표	당첨자(특공/일반) 서류 제출기간 및 심사(11일간)	계약체결 (11일간)
일정	2020년 7월 20일(월)	2020년 7월 21일(화)	2020년 7월 22일(수)	2020년 7월 23일(목)	2020년 7월 29일(수)	2020년 7월 30일(목) ~ 2020년 8월 9일(일)	2020년 8월 10일(월) ~ 2020년 8월 20일(목)
방법	인터넷청약 (8:00~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후 조회 가능)	※ 빠른등기우편접수	선착순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예약 후 진행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청약 Home - PC: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내실 곳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2-8번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건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건분주택 (노원구 상계동 82-8번지)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등은 별도 공지 예정

-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건분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애플 앱스토어 어플도 이용가능)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 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서류제출기간 내 서류제출은 빠른등기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 ※ 계약 체결은 사전 서류검토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2020.04.17.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이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 9314호(2020.07.0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95-3번지 일대 (상계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동, 총 1,163세대 중 일반공급 아파트 721세대(특별공급 총 28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6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3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조합원 공급 241세대, 임대주택 198세대, 보류지 3세대 제외)
- 입주시기 : 2023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세대수 [단위 : m²]

구분 (약식표기)	21	39	43	52A	52B	59A	59B	84A	84B	84C	84D	84E	97A	97B	합계
총 세대수	1	108	84	28	28	266	140	340	91	38	3	1	28	7	1,163
일반분양	1	11	-	17	17	190	137	210	85	38	-	-	15	-	721
조합	-	4	-	1	-	75	3	129	6	-	3	1	13	6	241
임대	-	93	84	10	11	-	-	-	-	-	-	-	-	-	198
보류지	-	-	-	-	-	1	-	1	-	-	-	-	-	1	3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m²]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0000819	01	021.8150	21	21.8150	12.1500	33.9650	15.5180	49.4830	11.3073	1	-	-	-	-	0	1	1
		02	039.0380	39	39.0380	20.1740	59.2120	27.7710	86.9830	19.7123	11	1	-	3	-	4	7	0
		03	052.8730A	52A	52.8730	21.4250	74.2980	37.6140	111.9120	24.7346	17	1	1	3	-	5	12	1
		04	052.9360B	52B	52.9360	22.0930	75.0290	37.6570	112.6860	24.9779	17	1	1	3	-	5	12	0
		05	059.9750A	59A	59.9750	21.2810	81.2560	42.6670	123.9230	27.0509	190	18	18	37	5	78	112	11
		06	059.9960B	59B	59.9960	20.8580	80.8540	42.6820	123.5360	26.9171	137	14	13	27	4	58	79	6
		07	084.9990A	84A	84.9990	24.0970	109.0960	60.4700	169.5660	36.3192	210	20	21	42	6	89	121	13
		08	084.9970B	84B	84.9970	24.1930	109.1900	60.4680	169.6580	36.3505	85	8	8	17	2	35	50	5
		09	084.9990C	84C	84.9990	24.1020	109.1010	60.4700	169.5710	36.3208	38	3	3	7	1	14	24	0
		10	097.9870A	97A	97.9870	26.7340	124.7210	69.7100	194.4310	41.5209	15	-	1	-	-	1	14	1
합계											721	66	66	139	18	289	432	38

-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 및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인 2층을 최하층으로 함. (단,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 향후 경미한 설계변경,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다소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구분	약식 표기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20%)		총도금 (6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0%)	2차(1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2020-12-15	2021-05-17	2021-10-15	2022-03-15	2022-08-16	2022-12-15		입주지정일	
1BL (101~104동)	21	1	1	73,968,000	103,032,000	177,0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17,700,000	35,400,000	
	39	3~4	2	136,235,000	189,765,000	326,0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32,600,000	65,200,000
		6~9	2	137,071,000	190,929,000	328,0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65,600,000
		16~20	2	138,325,000	192,675,000	331,0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33,100,000	66,200,000
		21층 이상	5	140,414,000	195,586,000	336,0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33,600,000	67,200,000
	52A	1	1	168,832,000	235,168,000	404,0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80,800,000
		2	1	172,593,000	240,407,000	413,0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41,300,000	82,600,000
		3~5	3	174,264,000	242,736,000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6~10	4	175,100,000	243,900,000	419,0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41,900,000	83,800,000
		12~20	5	177,190,000	246,810,000	424,0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84,800,000
	52B	21층 이상	3	179,697,000	250,303,000	430,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86,000,000
		2	1	171,757,000	239,243,000	411,0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41,100,000	82,200,000
		3~5	3	173,428,000	241,572,000	415,0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83,000,000
		6~10	4	174,264,000	242,736,000	417,0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83,400,000
		11~19	5	176,354,000	245,646,000	422,0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42,200,000	84,400,000
	59A	21층 이상	4	178,861,000	249,139,000	428,0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42,800,000	85,600,000
		1	1	185,548,000	258,452,000	444,0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44,400,000	88,800,000
		2	1	189,309,000	263,691,000	453,0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90,600,000
		3~5	3	191,398,000	266,602,000	458,0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45,800,000	91,600,000
		6~10	5	192,234,000	267,766,000	460,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92,000,000
		11~20	10	194,323,000	270,677,000	465,0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93,000,000
	59B	21층 이상	8	197,249,000	274,751,000	472,0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47,200,000	94,400,000
		2	1	186,801,000	260,199,000	447,0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44,700,000	89,400,000
		3~5	3	188,891,000	263,109,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90,400,000
		6~10	5	189,727,000	264,273,000	454,0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45,400,000	90,800,000
		11~20	10	191,816,000	267,184,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91,800,000
	84A	21층 이상	8	194,741,000	271,259,000	466,0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93,200,000
		2	6	254,083,000	353,917,000	608,0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60,800,000	121,600,000
		3~5	18	256,591,000	357,409,000	614,0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22,800,000
		6~10	30	258,262,000	359,738,000	618,0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61,800,000	123,600,000
11~20		60	260,770,000	363,230,000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24,800,000	
84B	21층 이상	50	264,531,000	368,469,000	633,0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126,600,000	
	2	2	252,412,000	351,588,000	604,0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20,800,000	
	3~5	6	254,919,000	355,081,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2,000,000	
	6~10	10	256,173,000	356,827,000	613,0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22,600,000	
	19~20	4	258,680,000	360,32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23,800,000	
84C	21층 이상	16	262,859,000	366,141,000	629,0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25,800,000	
97A	11~18	16	258,680,000	360,32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23,800,000	
	2	1	290,440,000	404,560,000	695,0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69,500,000	139,000,000	
	3~5	3	293,366,000	408,634,000	702,0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70,200,000	140,400,000	
	6~10	5	295,037,000	410,963,000	706,0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70,600,000	141,200,000	

2BL (105~ 110동)	59A	11~16	6	297,963,000	415,037,000	713,0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71,300,000	142,600,000	
		1	7	187,219,000	260,781,000	448,0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89,600,000
		2	10	190,980,000	266,020,000	457,0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91,400,000
		3~5	30	193,070,000	268,930,000	462,0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46,200,000	92,400,000
		6~10	49	194,323,000	270,677,000	465,0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46,500,000	93,000,000
		11~20	54	195,995,000	273,005,000	469,0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93,800,000
	21층 이상	12	199,338,000	277,662,000	477,0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95,400,000	
	59B	1	4	184,712,000	257,288,000	442,0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44,200,000	88,400,000
		2	5	188,891,000	263,109,000	452,0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45,200,000	90,400,000
		3~5	15	190,562,000	265,438,000	456,0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45,600,000	91,200,000
		6~10	24	191,816,000	267,184,000	459,0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45,900,000	91,800,000
		11~20	44	193,488,000	269,512,000	463,0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92,600,000
		21층 이상	18	196,413,000	273,587,000	470,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47,000,000	94,000,000
	84A	2	7	256,591,000	357,409,000	614,0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61,400,000	122,800,000
		3~5	21	259,516,000	361,484,000	621,0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62,100,000	124,200,000
		6~8	18	260,770,000	363,230,000	624,0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62,400,000	124,800,000
	84B	1	1	249,486,000	347,514,000	597,0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19,400,000
		2	3	254,919,000	355,081,000	610,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22,000,000
		3~5	9	257,426,000	358,574,000	616,0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61,600,000	123,200,000
		6~10	13	258,680,000	360,32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23,800,000
		17~20	10	261,187,000	363,813,0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25,000,000
		21~25	11	265,366,000	369,634,000	635,0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127,000,000
	84C	10	2	258,680,000	360,320,000	619,0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123,800,000
		11~18	20	261,187,000	363,813,000	625,0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25,000,000

※ 주택 공급 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제 단위의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니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한국감정원에서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의 자격 검증 등에 대한 판단 업무는 사업주체에서 실시합니다. 단, 주택소유현황, 중복·재당첨 사실 확인 등 전산검색이 필요한 사항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유상오피스 및 발코니 확장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오피스의 계약은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으며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일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로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의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 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 사업장의 계약금, 중도금 납입 일정 및 입주 예정 시기는 공사 진척상황(공정률)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공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입주개시 전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21	39	52A	52B	59A	59B	84A	84B	84C	97A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	1	-	-	4	3	4	2	1	-	15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	3	2	3	1	-	-	10	
	국가유공자 등(국가 보훈대상자 포함)	-	-	-	1	4	3	4	2	1	-	1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	3	2	3	1	-	-	9	
	중소기업 근로자	-	-	-	-	4	4	6	2	1	-	17	
소계		-	1	1	1	18	14	20	8	3	-	6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50%)	-	-	1	1	9	7	11	4	2	1	36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 경기거주(50%)	-	-	-	-	9	6	10	4	1	-	30	
	소계	-	-	1	1	18	13	21	8	3	1	66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우선공급(75%)	-	3	3	3	28	21	32	13	6	-	109
		일반공급(25%)	-	-	-	-	9	6	10	4	1	-	30
	소계	-	3	3	3	37	27	42	17	7	-	13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계	-	-	-	-	5	4	6	2	1	-	18	
합계		0	4	5	5	78	58	89	35	14	1	289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의거 지역우선공급(서울시 2년 이상 거주) 50%,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 50%는 수도권 거주자(서울시 2년 미만 거주, 인천광역시, 경기도)에게 공급할 수 있음.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 ~ 14:0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 .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공급에도 불구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공급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한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면적별 청약 예치금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h>경기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청약예금의 예치금액</td>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 rowspan="4">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비고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신중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분양가격 9억 이하)

구분	내용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66세대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장애인(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국가유공자 등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기복무제대군인(서울지방보훈청), 10년 이상 복무 군인(국군복지단), 중소기업 근로자(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분양가격 9억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66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단, 신청자 등본 상에 기재되어야 함) - 이혼 및 재혼 자녀의 경우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한 경우만 해당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함.)에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이내, 분양가격 9억 이하)**

	<p>배정세대수</p> <p>- 139세대</p>	
<p>신혼부부 특별공급</p>	<p>신청자격</p>	<p>-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단, 2018.12.11. 전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자촉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p> <p>※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임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p>※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기준의 120%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p> <p>※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함</p> <p>※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법령에 따름.</p>
	<p>당첨자 선정방법</p>	<p>-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p>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함.</p> <p>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p> <p>② 제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p> <p>-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p>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p> <p>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p> <p>*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p> <p>*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p> <p>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선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됨.</p>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5,554,983원	6,226,342원	6,938,354원	7,594,083원	8,249,812원	8,905,541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6,665,980원	7,471,610원	8,326,025원	9,112,900원	9,899,774원	10,686,64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5,554,984원 ~ 6,665,980원	6,226,343원 ~ 7,471,610원	6,938,355원 ~ 8,326,025원	7,594,084원 ~ 9,112,900원	8,249,813원 ~ 9,899,774원	8,905,542원 ~ 10,686,649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30%이하	6,665,981원 ~ 7,221,478원	7,471,611원 ~ 8,094,245원	8,326,026원 ~ 9,019,860원	9,112,901원 ~ 9,872,308원	9,899,775원 ~ 10,724,756원	10,686,650원 ~ 11,577,203원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3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55,729)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인 세대원의 합산 소득임.(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 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별지서식 2)	* 접수장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84호(2018.12.11.)]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분양가격 9억 이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18세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 함. ①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함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가점기준표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및 유의사항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당첨자 동·호수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 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재당첨 제한 기간 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등 부적격 통보를 받고, 이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 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일 주택형별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의 80%(소수점 이하 절상)에 한하여 기관으로부터 명단 추천받았음 ④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의 동·호수 및 미계약 동·호수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포함)는 당첨자발표시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예비입주자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경과 다음날 소멸됩니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가능 (단,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함. 부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신혼기간 내 소유했던 주택을 2018.12.11. 이전 처분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세대이며,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을 시 2순위 해당) - 특별공급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방문청약신청 접수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방문청약신청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사본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합니다.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의 경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빠른등기우편을 통해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시 청약자격 및 입주자선정기준 등은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착오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청약제도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야만 착오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 및 예비입주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사실은 한국감정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연속 2년 이상(2018.07.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수도권(경기/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봄.(입주자 저축 요건(1순위 24개월) 및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시 2년 이상)에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지역 1순위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 바람.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전 반드시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확인 조회요망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주택[규칙 제3조제2항 각호(제3호,제5호,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 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주택에 청약이 제한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 이상 당첨 시 재당첨 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변경요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큰 주택규모 청약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간 전입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기타) 청약접수 가능함, 단 1순위(해당)에서 600% 초과 청약접수 된 주택형은 1순위(기타) 접수를 받지 아니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함) ③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 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 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태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해당), 1순위(기타),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에 의거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②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청약신청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여부에 따라 분류 됨. -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 산정에서는 제외 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재당첨 제한(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입주자 자격제한의 적용 대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제한(1순위 자격제한, 재당첨제한 등)의 적용 대상은 당첨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당첨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함. - 서울의 경우 전체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해당지역 1순위 자격을 충족하게 됨. - 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머문 경우 해외거주로 인정하고, 90일 이하 단순 해외여행, 어학연수, 출장 등은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함.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9조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2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순위	신청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서울특별시 2년이상 거주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 경기도, 인천시 거주

	85㎡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초과 : 가점제 (5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하여 24개월 미만이거나 해당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충족하지 않은 자
	전 주택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순위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며, 외국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고,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 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02.0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산정시에는 제53조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제외) 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우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부양가족 산정 시) - 만 18세 이상 미혼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정제 및 추정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공개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람.(※ 서류제출은 빠른등기 이용 바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 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IV 청약신청 방법

■ 특별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방법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0.07.20.(월) (인터넷청약 : 08: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 원칙 (PC 또는 스마트폰)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KB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아래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의 세부 내 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1순위(해당)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	2020.07.21.(화) (인터넷청약 : 08:00~17:30)	
	1순위(기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2020.07.22.(수) (인터넷청약 : 08:00~17:30)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20.07.23.(목) (인터넷청약 : 08:00~17:30)	

-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홈(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입니다. 단, 고령자·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에 청약이 가능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인천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으로 접수해야 함(타지역 청약접수시 부적격 처리됨)
-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2018.07.09.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는 1순위 “해당지역” 접수일에 청약가능
 - 서울특별시 2년 미만,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접수(해당지역으로 접수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 1순위에서 청약 마감 시 기타지역(1순위) 및 후순위는 더이상 접수하지 않음.
-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다른 주택의 청약 신청 및 당첨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사업주체 안내 :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청약자격 사전관리]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검증(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청약자격 사전관리」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자격 사전관리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 17:30은 청약접수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청약 신청 시 해당은행에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 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 증명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임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최하층 주택우선배정 신청(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에 한함)

- 금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1층) 주택 공급 세대수는 주택형별 총별공급세대 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인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하층을 말함.

구분	최하층 우선 배정 안내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 중 (최하층)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만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대에 속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입양을 포함)를 둔 자 ※ 경쟁 시 ①,②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배정
신청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신청자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인터넷 청약하여 신청하고, 자격인증서류 및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서(별도 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인터넷청약 시 최하층(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자격인증 서류 및 최하층(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서(별도 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인증서류 ①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②번 해당자-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③번 해당자-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예비입주자)발표 일정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0.07.29. (수요일)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화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화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 예비입주자(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공개합니다.
-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동·호수 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미 방문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 신청한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와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한국감정원 청약Home (숲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7.29 (수) ~ 2020.08.07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7.29.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유의사항

■ 입주대상자 자격서류 제출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빠른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당사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제출대상	제출장소	유의사항
2020.07.30(목) ~ 2020.08.09(일) 11일간 10:00~16:00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당사 견본주택 (노원구 상계동 82-8번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1811-9797 / (우)01640	※ 예비입주자의 서류제출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위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류제출은 빠른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 및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포기로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 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 특별공급 현장접수 시 접수 당일에 자격인증을 위한 서류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필요할 경우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시 특별공급 현장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가입(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서비스에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제외) • 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가능(신청하고자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인터넷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지촉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발급바람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서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피부양 직계비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직계비속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군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정기준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재혼·이혼가정의 가정의 자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혼·이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 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3년 이상의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 자녀의 출생 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직계존속	• 신청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 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접수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당첨자 서류 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청약자 본인발급 필수(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전시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점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일반공급 구비서류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구비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순위로 당첨시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존속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 발급 바람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서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초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피부양 직계비속)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인 내국인 직계존속과 해외 체류중인 내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직계비속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로 출입국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접수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당첨자 서류 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청약자 본인발급 필수(대리발급분은 접수 불가)
	○	위임장	청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공급계약은 불가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VII 계약체결 안내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일	계약 장소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	2020.08.10.(월) ~ 2020.08.20.(목) (11일간)	당사 견본주택 (노원구 상계동 82-8번지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견본주택)

- ※ 사전서류검토 결과 부적격 판단 및 소명 불가 당첨자의 경우 계약금 입금을 하였더라도 공급계약 체결은 불가하오며, 환불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는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등)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공급계약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사전 예약제를 운영합니다.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내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2020.08.08(토) 10:00부터 예약가능하며, 사전예약자에 한해 계약이 가능합니다.
- ※ 각 세대별 지정된 계약 일정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 용도에 「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단, 대리인 계약 시 사용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본인 직접계약에 한함)
	○		계약금 입금증	-	• 건본주택에서 현금·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 이체 요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 분은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본인발급용)	본인	• 용도에 「아파트 계약 위임용」으로 직접 기재
	○		위임장	-	• 건본주택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7.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 시 유의사항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에 해당 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 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 자 (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세대 발생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며, 이후 분양분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합니다. (단, 청약자격 미달 시 공급계약이 불가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계좌부활요청서”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작성 및 제출방법 등 개별 유선문의 바랍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내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내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②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 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 3개월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정제 점수(가정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정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함)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금 1차 납부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수납 불가)
- (※ 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010102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01021701김철수)

구분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계약금	농협은행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01-0270-5701-11	
중도금 / 잔금			301-0270-5742-31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예정이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므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 미알선시에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가 스스로 금융기관을 통해 개인신용대출 등의 대출금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수분양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에 따른 제반비용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을 부담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임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은 유이자이며, 총 분양대금의 4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는 각 회차별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 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 하지 않으며, 현금납부에 대한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 해지(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당 사업지가 투기지역으로 세대당 1건(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자세한 용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 계약자는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입주자 사전방문 방법 : 입주지정 개시일전 입주개시 약 1개월 이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23년 06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VI

추가 선택품목 계약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금액 안내

구 분		52A	52B	59A	59B	84A	84B	84C	97A
발코니 확장 금액		14,000,000	14,000,000	15,500,000	15,000,000	16,500,000	16,000,000	16,000,000	17,000,000
계약금(10%)	계약 시	1,400,000	1,400,000	1,550,000	1,500,000	1,650,000	1,600,000	1,600,000	1,700,000
잔 금(90%)	입주 시	12,600,000	12,600,000	13,950,000	13,500,000	14,850,000	14,400,000	14,400,000	15,300,000

■ 발코니 확장형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21, 39㎡ : 발코니 확장 없음
- ※ 52A, 52B, 84B, 84C, 97A : 주방가구(확장부분),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화장대+가구도어+선반, 거실 아트월타일(유럽산), 전동 빨래건조대
- ※ 59B : 주방가구(확장부분),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화장대+불박이장, 거실 아트월타일(유럽산), 전동 빨래건조대
- ※ 59A, 84A : 주방가구(확장부분), 주방상판 엔지니어드스톤, 침실1 불박이장, 안방 드레스룸화장대+가구도어+선반, 거실 아트월타일(유럽산), 전동 빨래건조대, 복도 팬트리 도어 및 시스템 선반

■ 추가선택품목

- 시스템 에어컨

주택형	설치위치		금 액			비 고
			계약금(10%)	잔 금(90%)	총 금액	
21	기본(1)	거실 및 안방	300,000	2,700,000	3,000,000	삼성전자
39	기본(1)	안방	350,000	3,150,000	3,500,000	
	전실(2)	안방 + 침실1	400,000	3,600,000	4,000,000	
52A, 52B	기본(2)	거실 및 주방 + 안방	400,000	3,600,000	4,000,000	
	전실(3)	거실 및 주방 + 안방 + 침실1	500,000	4,500,000	5,000,000	
59A, 59B	기본(2)	거실 및 주방 + 안방	450,000	4,050,000	4,500,000	
	전실(4)	거실 및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650,000	5,850,000	6,500,000	
84A, 84B, 84C	기본(3)	거실 + 주방 + 안방	600,000	5,400,000	6,000,000	
	전실(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800,000	7,200,000	8,000,000	
97A	기본(3)	거실 + 주방 + 안방	650,000	5,850,000	6,500,000	
	전실1(5)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유상옵션 알파룸 팬트리 선택 시 가능)	950,000	8,550,000	9,500,000	
	전실2(6)	거실 + 주방 + 안방 + 침실1 + 침실2 + 알파룸 (※ 유상옵션 알파룸 팬트리 미선택 시 가능)	1,000,000	9,000,000	10,000,000	

• 가전기기

구 분		제조사	적용 주택형	금 액			비 고
				계약금(10%)	잔 금(90%)	총 금액	
주방가전 (선택형)	선택1. 하이브리드 쿡탑	쿠쿠	전평형(21, 39제외)	50,000	450,000	500,000	
	선택2. 후드일체형 인덕션	엘리카	59A, 59B, 84A, 84B, 84C, 97A	400,000	3,600,000	4,000,000	
빌트인 양문형 냉장고		삼성	전평형(21, 39제외)	600,000	5,400,000	6,00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 수납장 특화		삼성	전평형(21, 39제외)	140,000	1,260,000	1,400,000	

• 마감재 가구 선택

구 분		적용 주택형	금 액			비 고
			계약금(10%)	잔 금(90%)	총 금액	
현관	3연동 중문	전평형(21, 39제외)	150,000	1,350,000	1,500,000	
주방	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 + 미드웨이 선반	52A, 52B	120,000	1,080,000	1,200,000	
		59A, 59B	130,000	1,170,000	1,300,000	
		84A, 84B, 84C	140,000	1,260,000	1,400,000	
		97A	150,000	1,350,000	1,500,000	
침실	안방 붙박이장	84A, 84B, 84C	400,000	3,600,000	4,000,000	슬라이딩 도어
		97A	450,000	4,050,000	4,500,000	
알파룸	팬트리	97A	300,000	2,700,000	3,000,000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예시 : 101동 201호 홍길동 → 01010201홍길동 / 102동 1701호 김철수 → 01021701김철수)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보관(제출 방법은 별도 고지 예정) [건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구 분	금융기관명	예 금 주	계 좌 번 호	비 고
계약금 (10%)	KB국민은행	롯데건설(주)	465101-01-281716	
잔 금 (90%)	KB국민은행	롯데건설(주)	465101-01-281729	

■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중 일부는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공사로서 소요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수분양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 할 경우 사업주체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계약 해제사유와 동일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함께 해제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총 유상옵션금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됩니다. 단,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착수일(공사업체 및 자재선정 등의 업무 포함)후에는 사업주체는 위약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귀책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총 옵션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1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품목은 사이버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 또는 전체)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X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 입주자 설계고지사항

청약 신청 및 분양계약 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 및 설계 고지사항, 도면, 각종 홍보물들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설계 공지 내용		비고
주변환경 관련	기부채납 대지 및 시설	단지 인근 공원 및 공공공지, 도로, 체육시설은 본 사업지의 기부채납으로 단지내 소유대지 및 건물이 아니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향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제반 계획과 동선, 식재, 레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부채납 시설로 인하여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도로	단지 중앙으로 2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1BL(서측)과 2BL(동측)으로 구분됩니다. 단지 서측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 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BL 남측으로 15m 도로가, 2BL 북측 10m 도로 및 동측 7m 도로가 계획되나, 도로변에는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	1BL 단지 북측 일부 및 2BL 단지 중앙으로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며, 이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입주자측에 관리비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1BL 북측 공공보행통로는 상계 5구역의 사업 진행에 따라 공공보행통로의 공사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상철도 등	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서측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로 인하여 1BL 세대(특히 인접한 102, 103, 104동)에 소음 및 진동,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가철도 하부 지상에는 차로 및 보행로가, 지하에는 하천 암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접 사업지	1BL 북측에 위치한 상계 5구역의 사업 진행에 따라 도로 폭, 횡단보도 위치 및 수량 등 제반 교통계획이 변경되거나, 신축 건물들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들의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와 공사 진행에 따른 소음 및 분진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근 단지	1BL 서측에는 상계 4구역 신축 아파트(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최고 28층)가 있으며, 해당 건물들로 인하여 1BL의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BL 남측 상계 불암 대림아파트(최고 23층)와 북측 동아 불암 아파트(최고 22층)가 단지에 인접해 있으며, 해당 건물들로 인하여 2BL의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역경계	대지경계선 외부 레벨과 당 단지의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사 아파트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분양홍보물(모형, 카달로그, 각종 광고지)	분양홍보물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커뮤니티모형 등)과 카달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입체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1/2BL 분리단지	당 사업지는 상계 재정비촉진구역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단지 중앙 20m 도로로 분리된 2개의 블록으로 계획된 단지입니다. (서측 : 1블럭, 동측 : 2블럭) 2개의 블록은 하나의 단지로 인허가 진행하였으며, 각 블록은 각종 면적 및 설계 여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약전 고지사항 및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기준 시점	당 아파트는 2013년 7월 건축심의, 2014년 11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접수일(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경미한 설계변경	아파트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하지 않습니다.
	좋은빛 심의	분양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서울시 좋은빛 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설비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102동 옥상층, 106동 옥상층, 108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지하1층 뱀틀#1(101동) / 지하1층 뱀틀#5(105동) / 지하2층 뱀틀#1(101동) / 지하2층 뱀틀#5(105동) / 지하3층 뱀틀#1(101동)에 이동통신용 증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은 상품성 개선에 따라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로 설계변경 예정이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대창고	세대창고는 현재 전 세대에 대해서 설계 및 분양가에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세대창고 등 설계변경이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협의에 따라 일부 또는 미적용 될 수 있으며, 적용시 유상제공 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설계변경	단지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	세대 간섭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의 요철, 입면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	본공사 시, 시공여건고려 혹은 디자인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시설물(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드라이어어리어(DA)), 조경디자인(식재계획, 조경 바닥 디자인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DECK PLATE 또는 PC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동 출입구	각 동별 독립형 출입구 혹은 필로티형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계획됨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저층부 마감	주동 동출입구 및 세대 저층부 3개층(필로티 외벽면은 포함, 필로티 내벽면과 계단실, 공용홀은 제외)은 석재마감이 적용되며, 커뮤니티시설 외부 입면은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등 혼합마감이 적용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석재마감 및 석재뿔칠 혼합 적용될 예정입니다.
	저층 세대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진출입차량의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야외운동공간,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사생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상층 세대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집광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됩니다. 추후 이로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옥상	각 동별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 눈부심과 풍음 등이 인접한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연채광시스템	101, 109동 옥상에는 102동 저층 세대를 위하여, 107동 옥상에는 105동 저층 세대를 위한 자연채광시스템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관리비	단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무선 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영구배수시설 등의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 후 관리 규약에 따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동출입구 인근에 총 6개소가 설치되며, 1개동 개별형과 2개동 통합형으로 계획되어 사용공간과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개동 개별형 2개소 : 101, 104동) (2개동 통합형 4개소 : 102/103동, 105/108동, 106/107동, 109/110동)	

		<p>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해당시설 인근에 총 2개소 설치됩니다. (1BL 1개소 : 101동 남측 지상주차장 인근, 2BL 1개소 : 105동과 108동 사이)</p> <p>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장 크기는 수용대상의 규모, 내부 용기 배치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자전거보관소		각동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에 인접한 별도의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 조망권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		<p>계단실 창호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최상층 1개소와 최하층 1개소, 중간층 5개층마다(중간층 설치개수는 동별/호수별 층수에 따라 상이함)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고 나머지 층은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창이 설치됩니다. 다만, 그 위치, 크기 등은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창호들 중 최소 1개소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전층 개폐가 가능한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며,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창호는 화재시 연기유입을 막기 위한 공기가압을 위해 자동으로 닫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p>	
이사 여건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 형태(유리난간), 입면 장식, 돌출 발코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라인은 이사시 입주자 이동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시설물		단지 내 옥외공간에 설치되는 티하우스 시설물은 지붕과 기둥으로 이루어진 파고라형 시설물로 별도의 냉난방기기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지하 설비공간		<p>각동 지하 일부동 지하층에는 설비/전기 시설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주동의 인접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1동 지하 :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펌프실/물탱크실, 아파트용 빗물저류조/정화조/발전기실/전기실, 사우나/지열 기계실 104동 지하 : 아파트용 펌프실/물탱크실 105동 지하 : 근린생활시설용 정화조/펌프실/물탱크실/기계실, 사우나/지열 기계실 109, 110동 지하 : 아파트용 정화조/빗물저류조/펌프실/물탱크실/발전기실/전기실 101, 108동 옥상층에 아파트 및 근생 정화조 배기탑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외부 엘리베이터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접근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 1개소와 외부 계단 1개소가 각 블록별 설치됩니다. (1BL : 101동, 2BL : 105동) 이로 인해 인접한 주동의 세대는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		일부 주동 1층 세대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1층 4,5호, 102동 1층 1~3호, 105동 1층 1~4호, 106동 1층 4,5호, 107동 1층 4호, 109동 1층 3호)	
문주		문주는 블록별 차량 진출입구에 1개소씩, 총 2개소 설치됩니다.	
단지 출입구		문주 설치로 인하여 101동 4/5호 세대, 104동 3호세대, 106동 4/5/6호 세대의 저층부는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블록은 남측 주출입구 1개소(차량 및 보행자 출입 가능), 동측과 북측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계획됩니다. 2블록은 남측 주출입구 1개소(차량 및 보행자 출입 가능), 서측과 북측, 동측에 보행자용 출입구가 계획됩니다.	
서비스차량 동선		차량의 높이가 2.3m 이상인 택배차, 비상차량, 쓰레기수거차량 등의 차량은 지하 주차장 진입이 불가하며, 사용시 지상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p>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블록별 세대규모 및 주차장 효율, 설계여건 등에 따라 블록별 입주자의 주차장 이용층수가 상이하나, 세대당 주차대수는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하였습니다.</p> <p>(1블록 101/102/103/104동 : 지하 3개층 이용, 2블록 105/106/107/108/109/110동 : 지하 2개층 이용)</p> <p>주차장 진출입구는 경사로 진입 형태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진출입시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블록 : 101동 및 104동 사이, 2블록 : 106동 남측)</p> <p>1블록 주차장 진출입구는 계획상 외부도로와 인접하게 위치하여 방문객 차량 대기시 동선이 다소 혼잡해질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과정에서 관계기관협의에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주차장 환기를 위한 별도의 환풍이 설치되며, 급배기 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최하층 주차장 내 일반 및 영구배수 집수정기 설치되며, 집수정 배수시 펌프 소음 및 진동이 주차장 및 인접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노출 시공되어 인근 주차구역 주차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공사시 위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에는 부대시설 및 엘리베이터홀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환 가동에 따른 바람, 소음,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p> <p>관리사무소는 103동과 106동 하부 지상 1층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 피트니스, GX룸, 실내골프, 샤워/탈의실 등)이 101동과 105동 하부 지하 1층에 각 1개소씩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진출입을 위한 외부 엘리베이터와 채광확보를 위한 선근 및 외부 계단이 설치됩니다.</p> <p>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어린이집과 경로당은 104동과 108동 지상 1층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합니다.</p> <p>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경로당, 어린이집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 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됩니다.</p> <p>작은도서관 및 독서실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이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관리사무소는 지상 인근 공간에, 경로당 및 어린이집은 실내 공간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접 보도 및 조경공간,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펜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p> <p>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경비실은 블록별 차량출입구에 인접하여 각 1개소씩 총 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주의 디자인 개선에 따라 위치 이동 및 건축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입니다.</p>	
부대복리시설	<p>101동의 지상 1층 및 105동의 지상 1~2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p> <p>이와 인접한 주동의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해당 시설의 전용 주차장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인근 지상에 설치됩니다.</p> <p>근린생활시설에는 해당 시설 지붕 또는 인접한 외부공간에 실외기가 계획되며, 이에 따라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 휨 가동에 따른 바람 등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 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 추후 본 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매장 후면에 화장실(101동 및 105동) 및 지상 2층 접근을 위한 실내계단 및 엘리베이터(105동)이 계획되어 단지 내측으로 사인물 계획 및 매장 이용자 동선 이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인접한 동들의 저층세대는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빛 공해, 동선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지상 1층에 별도로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진출입 동선 구간이 공동주택과 공용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그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근린생활시설	<p>무인택배보관소는 각 주동출입구 1층 로비공간에 1개소씩 설치되며 인접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시 로비공간 내에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무인택배보관소	<p>101동</p>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101동 남측에 공원과 단지 차량진출입구, 문주, 지상주차장,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서측에 조경공간과 휴게공간이 조성되어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p> <p>지하층 설비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이 건물과 일체형으로 계획되며, 인접한 내외부 도로들과 문주 등 각종 시설들로 인하여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 눈부심,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층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남측 근린생활시설용 1개소, 1/2호 동출입구 인근 공동주택용 1개소)</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5호용 엘리베이터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p>	
102동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02동은 임대세대와 일반 분양세대의 전용 및 공용공간이 일체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102,103동 통합형),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p> <p>1~7호용 엘리베이터 3대, 8,9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3동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102,103동 통합형), 배치 여건상 타동 대비 거리가 먼 위치에 계획됩니다.</p> <p>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4동		<p>단지 서측에 인접하여 운행중인 지하철의 구조물에 매우 근접하여 있으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등)를 상대로 지하철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발생과 환경권 침해를 사유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동 서측에는 폭 30m 도로 및 상부 고가철도(지하철 4호선)가 있으며, 소음 방지를 위해 방음시설이 설치됩니다.</p> <p>방음벽은 1BL 단지 서측 도로변으로 높이 13m, 길이 129m로 계획되어 있으며, 1BL 단지 남측 도로변으로는 높이 15m, 길이 50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동의 저층부 세대는 채광 및 조망, 통풍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104동 단독형)</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5동		<p>지하층 설비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센터), 지상 1~2층 근린생활시설이 건물과 일체형으로 계획되며, 남측에 진입도로, 차량진출입구, 문주, 지상 주차장이, 동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조경 휴게공간이, 서측에 외부도로가, 북측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2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북동측 상가용 1개소 및 공동주택 105동 및 108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실외기가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인근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106동	<p>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 및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진입도로, 차량진출입구, 운주가, 북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조경 휴게공간이, 서측에 외부도로 및 지상 주차장, 맘스스테이션으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6동 및 107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 5.6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7동	<p>지상 1층에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단지 내 보행로가, 동측에 외부도로가,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북측에 공공보행통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6동 및 107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8동	<p>지상 1층 경로당 및 어린이집이 계획되며, 북측에 공공보행통로, 서측에 근린생활시설(1~2층)이, 동측에 외부 도로가, 남측 및 서측에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및 휴게시설들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5동 및 108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09동	<p>지상 1층에 필로티가 계획되며, 남측에 단지 내 보행로가, 서측에 외부도로 및 횡단보도가, 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조경공간 및 휴게시설들이, 북측에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도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진동,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9동 및 110동 통합형 1개소)</p> <p>최상층에는 펜트형 단위세대가 일부 있으며, 인접한 옥상공간은 해당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공용 설비 점검이 필요한 경우, 일시 개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설비(덕트장비 등)으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1.2호용 엘리베이터 1대, 3.4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110동	<p>지하에 설비공간이,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및 조경공간, 휴게시설들이, 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동측과 북측에 외부 도로로 인하여 세대에 소음, 동선 혼잡, 차량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일조권 및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지상 동출입구 인근에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저층세대에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공동주택 109동 및 110동 통합형 1개소)</p> <p>1,2,3호용 엘리베이터 1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p> <p>동 후면에는 정화조 청소용 배관이 설치되어 정화조 청소차의 출입 및 작업으로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단위세대	건본주택 및 홍보물	<p>사이버 건본주택은 59B, 84A형으로 제공되며,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건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 주방가구 배치 및 색상/ 타일, 도배지 무늬패턴/ 알파룸 유무 등은 동일평형이라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하지 않으며, 사이버 건본주택으로 진행됩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기본형(비확장)세대 선택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건본주택과 상이 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p> <p>사이버 건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사용된 단지이미지컷과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p> <p>세대내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경우, 출입도어에는 법규에 따라 비상시 안전한 대피를 위한 도어클로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달로그, 홈페이지에 게시되거나 건본주택 내 부착되어있는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컴퓨터그래픽(CG)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현관문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합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만든것으로 실제 시공제품 무관합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되는 천장형 냉난방기는 건본주택 전용으로 본 공사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마감형태, 천장,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 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84B / 84C	해당 타입들은 같은 열에서 층수에 따라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동호수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재	<p>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사이버 건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사이버 건본주택을 우선으로 함)</p> <p>공장생산 자재(인조대리석류, 타일, 벽지, 시트, 마루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됩니다.</p> <p>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p> <p>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일하지 않아 사이버 건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p>	

공통사항	<p>단위세대는 대청형으로도 시공되어 일부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시 동호수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아트월, 주방벽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합니다. ※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예 : 거실 쪽의 안목치수가 4,500mm일 때, 거실 아트월타일 마감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아트월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됩니다.</p> <p>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건본주택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하며 본 시공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건본주택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세부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p> <p>입주자가 사용을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일체의 이동식 가전)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당사가 안내하는 위치에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p> <p>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 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입주시 세대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p> <p>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p> <p>안방 앞 발코니, 보조주방, 실외거실, 대피공간의 경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도 비난방, 비단열 공간이며,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습니다.</p> <p>당 단지의 세대 천정고는 2.3m (욕실 2.2m)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층 세대만 특화계획이 반영되어 천정고가 2.5m (욕실 2.2m)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호의 크기는 1층 세대도 기준층 세대와 동일합니다.</p>			
	제공품목	<p>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이 상이하므로 사이버 건본주택 내 모형 및 카탈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각 세대 타입별 제공되는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상판포함)의 사이즈 및 내부구성, 형태, ACC 등은 서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받이, 조영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p> <p>21㎡, 39㎡ 형의 경우 확장형 선택이 없습니다.</p>		
		가구공사	<p>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합니다.</p> <p>가구의 힌지, 레일 등의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시 동등성능의 다른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가스배관이 설치되거나 후드의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주방가구 상판은 자재의 특성상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습니다.</p> <p>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창호공사	<p>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창호의 프레임은 향후 외관 개선에 따라 도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p> <p>사이버 견본주택에 시공된 내/외부창호의 개폐방향 및 디자인은 편의성 고려하여 실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전동 루버창은 천정형 에어컨 유상옵션시 제공하는 품목으로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상옵션 미 선택시 일반 수동형 루버창이 설치되며,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하며, 루버외부에 세대 환기를 위한 환기캡이 시공됩니다.</p> <p>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세대 전면에 위치한 거실 및 침실의 외부 창호는 분할형 이중창이, 안방의 외부 창호는 분할형 단창이 설치되며, 하부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안방 분합창은 일반 단창이 설치됩니다. 세대 후면에 위치한 주방 및 드레스룸 등의 외부 창호는 일반 이중창이, 보조주방의 외부 창호는 일반 단창이 설치되며, 하부는 콘크리트 난간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비확장형(기본형)을 선택할 경우, 세대 전면에 위치한 거실/안방/침실의 외부 창호는 분할형 단창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후면에 위치한 주방/보조주방/드레스룸의 분합창은 일반 이중창이, 외부 창호는 일반 단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하부는 콘크리트 난간으로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p> <p>발코니확장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거실 및 침실의 이중창 중 내부측 창호에만 L/S (Lift & Sliding)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안방의 분합창 및 외부창 제외)</p> <p>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 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전기/설비공사	<p>욕실 세면대, 양변기, 주방개수대, 가스쿡탑, 주방후드의 위치는 시공 중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닙니다.</p> <p>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p> <p>21/39㎡형의 경우 평형에 맞춘 공간계획상 식탁전등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일부평형에 따라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21, 39, 43㎡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p> <p>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발코니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본 공사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따른 쿡탑 상부장 사이스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일부 발코니에 우수입상배관 및 발코니배수배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 천장에는 욕실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됩니다.</p> <p>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매립배관(안방, 거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세대환기용 환기장비가 안방발코니나 주방발코니 상부에 설치되는 경우, 장비를 가리기 위한 천정 마감으로 인해 높이가 낮아 질 수 있습니다.</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홀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비용이 발생합니다.</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회가 가능한 '캐슬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지원됩니다.</p>	

		<p>스마트홈IoT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 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스피커는 별도 구매품목이며 스마트홈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 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합니다.</p> <p>도시가스 배관은 각동 외부 벽면에 노출 시공됩니다.</p> <p>세대 난방용 보일러 및 환기용 전열교환기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 내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p>	
	발코니 및 실외기실	<p>안방 전면 비확장발코니, 다용도실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욕실, 현관 등의 바닥레벨은 본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다용도실 세탁기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보조주방가구 형태는 세탁기/건조기 사용성 증진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건조기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다용도실 내부 시스템선반의 설치 위치는 실공사시 사이버 견본주택, 카달로그, 분양홍보물(모형, CG)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실외기실에 발코니 배수용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유상옵션	공통	<p>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의 선택 시 사이버 견본주택의 건립세대와 우물천정, 가구, 마감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p> <p>상기 별도 계약 품목 중 일부는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p> <p>추가 선택 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p> <p>추가 선택 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불가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로 설치품목 및 설치위치가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 온도조절기, 스프링쿨러, 환기디퓨저, 천정물딩 및 커튼박스, 걸레받이 등의 수량과 형태,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방벽 엔지니어드스톤+미드웨이선반 옵션 미선택시 해당위치에 벽타일(300*600)이 시공되며 주택형별 컬러 및 모델이 상이하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모형 및 카탈로그를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안방 슬라이딩 볼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측면의 볼박이장, 드레스룸, 파우더장, 가구설치용 날개벽 등의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유상옵션의 상품구성 및 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유상옵션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형의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불가합니다.</p> <p>현관 중문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신발장 날개벽, 천정물딩 및 걸레받이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으며, 현관 디딤판 사이즈 및 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주방가전 선택 품목은 주방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적용품목이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또는 후드일체형 인덕션 유상옵션 미선택시에는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p> <p>추가 선택 가전제품의 경우, 용량, 효율, 에너지 등급 등의 기기의 성능 면에서 입주 시점의 최신제품에 비하여 사양, 사용성 등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발트인 양문형 냉장고 및 발트인 감치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상부장이 있는 오픈형 냉장고장이 설치됩니다.</p>	

X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사	시공사
상호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23길 11,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260271-0002546	110111-0014764

■ 감리자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 및 전기통신감리
회사명	(주)한림이앤씨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주)아이비엔지니어링
감리금액(VAT 포함금액)	3,482,153,400원	701,642,830원	731,5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p>녹색건축물 예비인증서</p>	<p>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p>	<p>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	----------------------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기밀창호	적용	외기직접면한 창호는 KS F2292 기준 2등급 이상 제품 사용
고효율 자재	적용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사용 난방, 급수 및 급수펌프는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각1개소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해당 세대현관에 1개소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 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 내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정열스위치	적용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자동정열스위치 설치
실별온도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 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 규칙」 제1조의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310,060,000,000 원	01292020-101-0005400 호

※본 주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보증약관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약관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lotteacastle.co.kr>

■ 견본주택 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82-8번지

■ 분양문의 : ☎ 1811-979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